

보는 바와 같이 ○○건설 주식회사(이하 '○○건설'이라 한다)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, 그 예정 배상액의 지급을 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.

이 점을 타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2. 상고이유 제2, 3점에 대하여

원심은,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, ○○건설은 도급인인 파산자 ○○부동산신탁 주식회사(이하 '○○부동산신탁'이라 한다)가 약정에 위반하여 기성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것 뿐이고, 비록 공사 중단 후 ○○건설에게 부도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기성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던 다른 공사현장에서는 아무런 차질 없이 공사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, ○○부동산신탁이 제때에 기성금을 지급하였더라면 ○○건설은 자신이 담당하던 공사를 충분히 시행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, 이 사건 공사 중단 및 도급계약 해지에 있어 ○○건설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.

그리고 ○○건설의 채무불이행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심판결에 손해의 범위에 관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것이 못 된다.

이 점을 타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.

3. 상고이유 제4, 5점에 대하여

원심은,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, 주식회사 ○○은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○○부동산신탁에게 323억 3천만 원을 예치시켜 놓았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, 설사 ○○부동산신탁이 원고 주장과 같은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는 위 예치금에서 먼저 전보받으면 되고 위 예치금의 액수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고 있는 이상, 별도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,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,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.

4.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,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 